

채권자 ○ ○ ○
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1
채무자 ○ ○ ○
부산시 ○○구 ○○로 1

목적물의 가액 : ○○○원
피보전권리의 내용 :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

신청취지

1.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 2.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.
 3.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 4.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-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청이유

1.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 임대보증금 50,000,000원 월 임료 금 1,000,000원에 임차기간을 20○○. ○. ○.부터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
2. 그러나 채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 한 후에도 이를 명도하지 않고 월 임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점유명의를 타에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본안소송을 서두르고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점유보전의 방법상 이권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4.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

1. 임대차계약서 1부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
1.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

20 . . .

위 채권자 (날인 또는 서명)
(연락처: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◇ 유의사항 ◇

1. 피보전권리의 요지란에는 발생일자과 발생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(예시) 2003. 1. 1. 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2.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(팩스 ,이메일 주소등도 포함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(별지 예시)

부동산의 표시

1. 서울 종로구 청운동 100
대 200 m²
2. 위 지상
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
50 m²
3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
샛별아파트 가동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1층 101호
철근콘크리트조 86.03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토지의 표시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,400m²
2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,600m²

대지권의 종류 : 1. 2.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1. 2. 3,000분의 300